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실용신안등록증(이하“전자파일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을 전자파일실용신안등록증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120조의6까지”를 “제120조의7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